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3번
----------	-------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0년 5월 25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 라. 상정결과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삼청각을 출연기관인 (재)세종문화회관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 사 용 자 : (재)세종문화회관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0,064 m^2 , 건물 연면적 4,399 m^2
- 사용허가 기간 : 2020.4.1 ~ 2020.6.30(3개월)

(2)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現민간수탁자인 (재)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삼청각 운영은 협약기간 종료('20.3.31)후 '20.6.30까지 협약기간 연장하여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오로지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4) 기 타
 -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4.28.)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심의결과 : '적정'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본 동의안은 삼청각(성북구 대사관로 3)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는 ‘한식문화관 신축’을 통해 삼청각 기능을 보완, 食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삼청각의 프로그램과 한식문화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한식문화의 콘텐츠를 경험하는 한식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을 진행 중임.

〈 삼청각 한식문화복합공간 조성계획 〉

【 주요사업 】

- | | |
|-------------|--------------------------------|
| ● 한식문화공감 | - 한식문화 전시, 한식라이브러리, 소규모 세미나 운영 |
| ● 캐주얼 한식다이닝 | - 한식관련 다양한 味食 체험 기능 |
| ● 시민 한식학교 | - 한식관련 체험 및 교육 전반적 기능 |
| ● 삼청공방 | - 한식을 주제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인큐베이팅 공유 |
| ● 배움의 식탁 | - 한식 콘텐츠 연구 개발 |

- 서울시는 위 계획에 따라 삼청각 6개동을 리모델링하고 삼청각의 공간구성을 재배치하여 한식문화관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21년 개관 목표)하기 위하여, 삼청각 시설관리 사업을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20년 7월 예정)하여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사업관련 사업의 전문성에 집중할 예정임.
- 삼청각은 그동안 문화사업, 식음료 운용사업 등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

로 운영해왔으나, 연장계약(2020.4.1~2020.6.30, 3개월간) 체결 시 수익창출형 사업을 제외하고, 보존재산(행정재산)으로서 한옥시설 등 유지관리 사업만을 위탁업무로 체결하였음.

- 이 기간 동안 (재)세종문화회관은 한식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하여 노후 시설(창호교체, 바닥공사 등)개선 및 안전시설 교체 등을 진행하고 업무 이관 협의 및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임.

< 삼청각 한식문화복합공간 조성계획 추진경위 >

- '16. 4.~12. : 삼청각 운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市 투자심사
- '17. 7.~12. : 운영방안 재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15회)
- '18. 3.~ '19. 3. : 민간위탁 재협약(세종문화회관, '18.4.~'19.3./'19.4.~'20.3.)
- '18.11.~'19. 7. : 삼청각 경영 컨설팅 및 리모델링 지침 마련 용역
- '19. 3.~12. : 한식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19. 10. :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실시(~'20.5월)
- '20. 1. :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 신설
- '20. 4.~6. : 민간위탁 연장계약 체결

- 서울시는 삼청각의 한식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재)세종문화회관의 삼청각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을 연장('20.4.1.~'20. 6.30)하고, 이 기간 중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시설 유지 관리만 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에 관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 (재)세종문화회관의 민간위탁 협약의 연장된 기간 동안(20.4.1.~'20.

6.30)의 삼청각 사용료 면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한식당 영업 등 수익

활동 없이 오로지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조건을 충족함.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사용료 면제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은 사용요율의 최저 기준(1천분의 10이상)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서울시가 자본금

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1천분의 10이상으로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음.

- 또한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4.28.)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았음(별첨1).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삼청각 감면사용료 〉

사업명	구분		내역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m ²)	기준가격(천원)	감면사용료(천원)
삼청각 시설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4	10,064	35,887,586	89,718
문화본부 박물관과		건물	2	4,399	907,516	2,268

- 본 동의안은 삼청각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감면사용료는 본 재산 기준가액의 1,000분의 10범위내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별첨1>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7. [사용료 감면] 삼청각 시설 운영

○ 심의사항 및 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구분		내역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7	삼청각 시설 운영 문화본부 박물관과	사용료 [신규]	토지	4	10,064	35,887,586	89,718
			건물	2	4,399	907,516	2,268

○ 사업개요

세부내용	
○ 삼청각 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 목적 및 용도	공연, 문화·연회행사, 식음료판매
- 위치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330-115외 3필지)
- 사용면적	〈토지〉 10,064㎡ / 〈건물〉 4,399㎡
- 당사자	〈허가부서〉 문화본부 박물관과 〈수허가자〉 (재)세종문화회관
- 허가기간	‘19.04.01 ~ ‘20.03.31 [1년] ※ 최초 허가일자 ‘09.07.01
- 무상사용기간	‘20.04.01 ~ ‘20.06.30 [3개월]
- 기준가격	〈총액〉 36,794,935천원 〈토지〉 35,887,419천원 [㎡당 공시지가(천원) × 면적(㎡)] 〈건물〉 907,516천원 [시가표준액]
- 감면액	〈총액〉 91,988천원 〈토지〉 89,719천원(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금×사용기간) 〈건물〉 2,269천원(시가표준액×사용요금×사용기간)
- 감면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24조
- 감면필요성	현 민간수탁자인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20.03.31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실시를 위해 사용료감면 필요

○ 심의결과 : **적정**

심의내용	
○ 본 건은 서울시 출연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삼청각' 시설이 내부 공사로 인하여 운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미운영 기간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20.4.28)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득함	
〈의견〉	재산관리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용료 감면 기준 준수 여부, 영구시설물의 축조, 전대 또는 허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1593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삼청각을 출연기관인 (재)세종문화회관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 사용자 : (재)세종문화회관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0,064㎡, 건물 연면적 4,399㎡
- 사용허가 기간 : 2020.4.1 ~ 2020.6.30(3개월)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現민간수탁자인 (재)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삼청각 운영은 협약기간 종료('20.3.31)후 '20.6.30까지 협약기간 연장하여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오로지 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4.28.)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심의결과 : '적정'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작성자 : 박물관과 한식공간조성추진반장 이병두(☎2133 - 4232)